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사항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지역본부 산하 공사현장의 기계·전기·건축·토목 등 전문건설업체 감독 및 일반건설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교육(강사: 오철수 기계부장, 박현진 기계과대리)을 실시하였다. 이번 주공의 하도급교육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추진해온 하도급제도 집서 정착과 관련하여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대한설비 건설협회 회원사의 건설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하도급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부 실시공방지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돕고자 본 내용을 전면 발행하여 지난 7월호, 8월에 이어 금번 9월호를 끝으로 게재를 마감한다. [편집자註]

[3] 업무내용

5] 하도급 대가지급 관리

(1)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수급인은 건설공사대금(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하도급대금(노임 제외)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목적물의 수령일(기성금 신청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시공참여자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이 지연시에는 수급인이 시공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5항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3조 제3항, 제4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무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 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증은행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수급인

은 이에 대응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수급인이 협력업자와 협력관계가 우수하거나 재무구조가 건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도급계약에 한함)

② 수급인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결과가 우수(A등급)한 경우

③ 하도급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사입찰을 하였으므로 위 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54조 규칙 제28조 (참조)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 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각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각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응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각 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3조의 2, 영 제3조의 2 (참조)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3)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내용 통보

사업단장이나 공사사무소장은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에게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 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통보 : 공사사무소장, 사업단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제7항 (참조)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3조 제14조 (참조)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노임 및 하도급 대가지급 관리

1) 하도급 노임의 현금 지급

① 수급인은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 노임 포함)을 월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노임,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를 노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가지급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

는 공사에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수급인(현장)이 보관·관리하며, 공사관계자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 확인 사항

① 공사사무소장 등은 노임(하도급 노임 포함) 지급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와 기타 입증자료에 의거 지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임 지급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지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재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시에는 어음할인료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어음할인료 계산 예시 : 하도급 어음 지침서 참조

3)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조치 사항

① 현장지급 이행을 시공평가 점수에 반영

② 현장 점검시 하수급자 직접 면담 등으로 어음 지급 여부 등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노임 체불시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④ 노임의 어음 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역본부(지사)장은 절차에 의거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후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3조 (참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제16조(노임 직접 지급)

① 계약자는 공사의 현장 근로자의 노임(하도급 노임 포함)을 월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거나 하도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 명세표”를 노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계약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공사의 현장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계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현장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 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공사가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5) 선급금의 지급

1)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을 때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가 지급받은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참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6조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6)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직접 지급 대상

①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④ 공사에가의 88%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수급인의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⑥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⑦ 하도급 위장신고,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2) 직접 지급 절차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공사로부터 대가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공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다. 공사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공사는 수급인이 공사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공사에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수급인이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대가의 지급 청구(공사대금 지급신청서)시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수급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토록 한다. 공사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계좌 입금)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시에는 직불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정된 계약된 공사는 이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는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공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사는 하도

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 기준으로 한다.

④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서면 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하수급인은 공사로부터 위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를 공사에 통보한다. 공사는 원·하수급인에게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위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에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8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위 직접 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할 것

3.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지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4.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급인은 하수급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하도급거래 공종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파산·부도·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등)

① 공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한 내용대로 계약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계약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사가 하수급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 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 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회계에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의 규정중 하수급인을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본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5조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제15조(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등)

① 공사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중 계약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전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하도급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공사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계약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직접 지급 중지 요청

①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100분의 88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로 인한 직불시에는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수급자의 직접 지급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지급 제외

④ 공사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참조)

4) 조정신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정가격을 대비하여 100분의 88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참조)

6] 건설기술자 배치(현장대리인)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하도급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현장배치 최소 여건 :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 :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포함되나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의거 확인되어야 한다.

(4) 시공관리 책임자에 종사한 기간 : 당해 등급 외에 하위 등급 기술자로서의 경력도 포함한다.

(5)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로서 1건의 공사에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는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와 직업훈련기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6)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7)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7일 이내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의 공사에정금액 산정 방법 :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에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나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여 산정

(8)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9) 발주자는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신체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시에는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 하도급업무지침서 참조

※ 건설기술자의 범위 : 하도급업무지침서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에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정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에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공사가 지정한 사항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제20조(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① 계약자는 공사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 제출하고 하도급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7]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요구에 불응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 해지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발주자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하도급비율의 산정

1)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원도급내역에 포함하여 하도급비율 산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수급인이 직접 가입하는 산재보험료는 하도급비율 산정시 제외 하되, 하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부분 원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산정

3) 하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 내역이 미반영시에도 하도급비율 산정시 제외

4) 손해보험료는 수급인을 가입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주공, 하수급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므로 하도급비율 산정시 제외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기관

원·하수급자간의 보증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에 의한다.

대한주택공사 하도급 교육자료

- 1)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 3) 업종별 공제조합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7) 전기통신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 8) 전기통신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6조(하도급계약통지서)

- ①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통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하도급계약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3조의 2 제2항 (참조)

(3)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1)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2)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3) 수급인은 노임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 ①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운영

- 1) 설치 : 본사 종합민원실 및 지역본부(지사) 공사부
- 2) 홍보 : 공사사무소장은 각 공구 주출입구, 공사사무소 입구 등 공사관계자 다수가 보기 쉬운 위치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간판 규격

- ① 규격 : 120×90cm(유성페인트 백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 ② 설치 위치 : 각 공구 주출입구 잘 보이는 위치
- ③ 주공 마크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공디자인 통합실시 지침에 의거 표시
- 3) 조치
 - ① 신고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확인 조사 및 조치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②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
 - ③ 하도급 관련사항은 직접 지급